

교통연구소 설치·운영에 관한 내규

2019. 6. 13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대한교통학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교통분야 연구와 관련 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부설 교통연구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해 내규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1. 교통 분야관련 교육, 감리, 인증, 평가, 홍보업무 등 수행
2. 우리나라 사회의 각종 교통현안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세미나, 토론회, 강연회, 발표회 등 개최
3. 교통 정책과 기술 발전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 및 개발
4. 기타 연구소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수행

제2장 조직 구성 및 임명

제3조 (조직과 구성원)

1. 교통연구소에는 소장 1인과 다수의 센터장을 둔다.
2. 소장은 대한교통학회 회원 중에서 상임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통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소장은 교통연구소를 대표하고 모든 교통연구소 업무를 총괄하며 대한교통학회의 상임이사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4. 교통연구소의 센터장은 학회 회원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5. 센터장은 교통연구소의 해당 세부 분야에 대한 업무를 관장한다.
6. 교통연구소에는 연구원과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제3장 운영과 관리

제4조 (운영과 관리)

1. 교통연구소는 자치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교통연구소의 소장은 본 학회에 의뢰되는 연구용역비의 학회기여금 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요청 할 수 있다.
3. 교통연구소의 소장은 매년 예산을 작성하여 사업계획서와 함께 회장에게 제출하고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4. 이외 사항들에 대해서는 교통연구소의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5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관리)

1. 교통연구소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운영위원회는 대한교통학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학술담당부회장, 행정담당부회장, 교통연구소장, 기타 회장이 임명하는 회원 등 총 5명으로 구성한다.
3.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교통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과 관련된 사항
 - 2) 연구원과 사무직원의 급여와 상벌에 관한 사항
 - 3) 기타 교통연구소에 필요한 사항

제4장 연구용역 수행

제6조 (연구용역 수행 절차)

1. 교통연구소로 의뢰된 연구용역에 대한 시행여부와 연구책임자는 회장, 학술담당부회장, 소장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한다.
2. 상세 연구 용역수행절차, 관리, 용역비 지급 등과 관련해서는 학회 연구용역 시행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

부칙

본 내규는 상임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